

서울특별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040
------	------

2021. 2. 1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I.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2년 1월 21일, 오한아 의원 외 31명

나. 회부일자 : 2021년 1월 25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05회 임시회】

-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1.2.14.)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오한아 의원)

1. 제안이유

가. 서울시의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수립 · 시행에 있어 거리공연가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서울시민의 거리공연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민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수립 · 시행에 대한 시장의 노력 의무를 규정함(안 제3조제2항).

Ⅲ.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주우철)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거리공연가의 표현의 자유 보장과 서울시민의 거리공연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제출되었음.

나. 개정의 필요성

- 서울시 문화분부는 ‘문화로 행복한 서울 추진계획(2011.2.14.)’에 따라 열린공간을 활용한 거리예술활성화로 시민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2011년부터 ‘거리공연존’을 운영하고 2017년 「서울특별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인해 2019년부터 ‘서울365거리공연’을 시행하고 있음.
- ‘서울365거리공연 운영’ 사업은 서울도심의 공원·광장·시장 등 100여개소 열린공간을 ‘거리공연존’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코로나19로 8월부터 150팀이 선발되어 14개소(1,000회)에서 공

연했고, 2021년 150팀이 50개소(2,000회)에서 공연을 실시하였음.

- 또한, 서울문화재단에서는 서울의 문화정체성을 구현하고 거리예술 및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으로 ‘서울거리예술축제’와 공간 운영을 통해 예술가 창작지원 및 전문가를 양성하는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문화본부의 ‘서울365거리공연’은 ‘문화예술 전공자 또는 문화예술 활동을 희망하는 자’로 구성된 공연단이며, 서울문화재단의 ‘서울거리예술축제’와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는 ‘예술인 혹은 양성된 예술인’이 참여하는 공연단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음.
- 「2020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서울문화재단)」에 따르면, 일반 시민이 문화예술활동에 관심있다는 응답은 56.4%로 2018년 44.2% 대비 12.2%p 증가하였고, 문화예술관람, 문화예술활동, 여행, 야외나들이를 희망하는 일반시민 계층에서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관심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됨.
- 따라서 시민의 거리공연 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시민들의 참여 의지를 반영한 시의적절한 입법정책적 방안이라 할 수 있음.

다. 주요내용 검토

- 안 제2조(정의)는 현행 ‘항’ 으로 규정된 용어를 ‘호’ 로 나열하는 것으로 「법제이론과 실제(국회 법제실)」에 따르면, 하나의 조를 세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에 항, 호, 목 등으로 구분하나 정의규정은 일반적으로 정의할 용어가 여러 개일 경우 각 호로 나열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이 보다 명확한 입법규정임.
- 안 제4조는 전문, 비전문 예술가 또는 예술인·생활예술인 구분 없이 시민에게 더 많은 거리공연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거리공연 참여 기회 확대에 관한 사항을 시장의 책무로 반영하는 것임.
- 최근 3년, ‘서울365거리공연’ 의 장르별 참여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200팀, 2020년과 2021년 각각 150팀이 참여했으며, 음악(노래), 기악, 퍼포먼스, 전통 장르 순으로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최근 3년, 서울365거리공연 장르별 참여자 현황>

연도별	음악(노래)	기악	퍼포먼스	전통	합계
2021년	82(55%)	30(20%)	26(17%)	12(8%)	150
2020년	90(60%)	24(16%)	23(15%)	13(9%)	150
2019년	118(59%)	37(18.5%)	30(15%)	15(7.5%)	200

- 다만, 거리공연단 선발 시 집행부에서는 예술가나 시민을 별도로 구분하지는 않지만 모집대상을 ‘문화예술 전공자 또는 문화예술 활동을 희망하는 자’ 로 현재도 아마추어 공연단에게도 공연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따라서 시장의 책무에 ‘시민의 거리공연 참여 기회 확대’ 를 명시함으로써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관람이 아닌 참여를 통해 문화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8명**, 전원찬성)

V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한아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040
----------	------

발 의 년 월 일 : 2022년 01월 21일

발 의 자 : 오한아 의원(1명)

찬 성 자 : 권영희, 김경영, 김경우, 김기대, 김정태, 김제리, 김태수, 김태호, 김평남, 김희걸, 박기열,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안광석, 양민규, 이광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종환, 임종국, 장상기, 전석기, 최정순, 홍성룡, 황규복 의원(31명)

1. 제안이유

- 서울시의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에 있어 거리 공연가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서울시민의 거리공연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민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에 대한 시장의 노력 의무를 규정함(안 제3조제2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예술인 복지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연극, 무용 등을 공연하는 예술 행위를 말한다.
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제2항 중 “정책의 수립·시행에 있어서”를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시민의 거리공연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u>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u></p> <p>①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연극, 무용 등을 공연하는 예술 행위를 말한다.</p> <p>②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p> <p>제3조(시장의 책무) ① (생략)</p> <p>②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에 있어서 거리공연가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p>	<p><u>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u></p> <p>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연극, 무용 등을 공연하는 예술 행위를 말한다.</p> <p>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p> <p>제3조(시장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시민의 거리공연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 --.</p>